제6장

소득산정 및 재직·사업영위 확인

1 소득의 종류

- 1) '증빙소득'은 소득금액이 객관적인 자료(소득금액증명원 등)로 입증되는 모든 소득(근로·사업·연금·기타소득)을 합산한 종합소득
- 2) '인정소득'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추정한 소득
- 3) 증빙소득의 입증을 원칙으로 하나, 소득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본 장 5.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에 따라 연소득 산정 허용

2 중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

- 1) 채무자와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
- 0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 각 소득별 최근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
- 2) 연소득은 '연도별 과세전 연소득', '1년간 연소득'으로 산정
 - 0 1년 미만 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에 한해 일할*하여 연환산
 - * 연간일수는 365일로 하되 윤년의 경우 366일로 적용하며, 초일산입 및 소수점 이하 절사
- 3) 2개년 증빙소득의 차이*를 계산하여 20% 초과 여부에 따라 연소득 산정
 - * 산식 : | (최근년도 소득 최근년도의 전년도 소득) / 최근년도 소득 | × 100% > 20%
- (1) 20% 이하 : 최근년도 소득
- (2) 20% 초과 : 2개년 평균소득
- (3) 위 (2)에도 불구하고 증감한 소득이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(이하 '상시소득')인 경우 최근년도 소득으로 연소득 산정

※ 2개년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의 연소득 산정방법 예시

- □ 채무자가 입증한 서류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
- ① (소득산정) '22년 과세전 연소득 + (확인) '21년도 과세전 연소득 : '22.1월~12월(12개월) 소득 + '21.1월~12월(12개월) 소득
- ② (소득산정) 최근 1년간 연소득 + (확인) 최근 1개년 소득의 전년도 1개년 연소득: '22.9월~'23.8월(12개월) 소득 + '21.9월~'22.8월(12개월) 소득
- ③ (소득산정) '23년 과세전 연소득 + (확인) '22년 과세전 연소득 : '23.1월~'23.8월(8개월) 소득 연환산(사업소득은 선택) + '22.1월~12월(12개월) 소득

※ 지속가능성을 가진 상시소득의 판단

- 1. 근로소득인 경우(휴·복직자)에는 상시소득으로 간주하되,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
- 2. 사업소득자 등은 채무자가 상시소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, 발생 시점부터 1년 이상 지속됨이 증빙되면 상시소득임을 포괄적으로 인정
- 3. 근로소득자 외에도 보험설계사, 시간강사, 기타 사업자 등도 위의 사유가 입증되면 상시 소득으로 인정 가능

※ 상시소득 입증 예시

- 1. 근로소득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· 재직증명서 등
- 2. 사업소득 :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(자가건물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), 고용계약서 등
- 3. 연금소득 : 연금증서 ·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속적인 연금지급 입증 서류
- 4. 기타소득 : 고용계약서 등 (원칙적으로는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, 근로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기타소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함)
- 4) 소득발생기간이 1년 초과~2년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소득을 연환산하여 비교
- 5) 소득발생기간이 1년 이하로 2개년 소득확인이 불가한 경우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% 차감하여 소득 산정(이하 '10% 차감소득')
 - ㅇ 상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차감 미적용
- 6) 제5장 1. DTI(총부채상환비율)에서 정하는 '실수요자' 소득요건 판단 시, '2개년 평균소득' 또는 '10% 차감소득'을 적용하는 경우 이를 적용한 소득 으로 판단
- 7) 소득발생기간이 현재 유지중인 소득원을 기준으로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,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연환산
- (1) 사업소득은 계절효과로 인해 연환산이 도리어 소득액을 왜곡할 수 있어 연환산 여부를 선택 가능
- (2) 연환산 시에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소득입증서류 상의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 ~ 1년 미만임을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며,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로도 연환산 가능
- (3) 소득발생기간(재직기간)은 1개월 이상이나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가능
- (4) 채무자가 2개 이상의 소득원을 유지중인 경우 각 소득별로 연환산하여 합산
- (5)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서류로 근로기간이 입증 되는 경우 연환산 가능

- (6) 연금소득은 수령증서 상의 연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평균 실수령액을 연환산한 금액
 - ① 연금소득 산정 시 공적연금*, 기업연금, 개인연금을 포함
 - * 군인연군, 공무원연군, 사립학교교원연군, 국민연군(노령연군, 장해연군, 유족연군 등) 등 공적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군소득(기초생활수급비, 국가유공자 보상군, 보훈급여 등 연군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군과 수당 등은 포함)
 - 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(구직급여·상병급여·연장급여·조기재취업 수당·직업능력개발수당·광역구직활동비·이주비) 제외

※ 소득원별 연간소득 산정방법 예시

소득원	서류명칭	연소득 산정방식
- 근로 소득	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(ISA용)	■ 1년 소득확인 시 : 증명원상 수입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 ■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소득합계 ÷ 해당 근무일수 × 연간일수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	■ 1년 소득확인 시 : 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■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소득합계 ÷ 해당 근무일수 × 연간일수
	급여명세표 등(임금대장, 근로소득원 천징수부 등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 명서)	■ 1년 소득확인 시 : 12개월 합계금액 ■ 1년 소득확인 불가 시 : 월별합계금액÷ 해당근무일수 × 연간일수
	소득금액증명원	■ 증명원상 소득금액(연환산 선택)
ПО	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■ 영수증상 소득금액(연환산 선택)
사업 소득	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	■ 영수증상 지급총액×60%(연환산 선택)
	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(세무사 확인분)	■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(연환산 선택)
연금 소득	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	■ 1년 소득 확인 시 : 1년간 수령액 합계 ■ 1년 소득 확인 불가 시 : 수령액 합계 ÷ 수령기간일수 × 연간일수
기타 소득	소득금액증명원	■ 증명원상 소득금액 또는 지급받은 총액

3 휴직 등 예외적인 경우의 증빙소득 산정방법

- 1) 신청일 기준 휴직자는 휴직 직전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한 후 휴직 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
 - o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내*에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소득발생이 없는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
 - * (예시) 2023년 2월 신청한 경우 2020년 2월~2023년 /월
- 2) 본 절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장 2. 증빙소득의 연소득 산정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- 3) 신청일 기준 복직자는 복직 이후 최근년도 소득으로 산정
 - ㅇ 복직 이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할 수 있음
- 4) 신청일 기준 퇴직(또는 폐업)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
- 5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
- 6)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별도의 소득입증이 없는 한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
- 7) 해외소득의 산정은 소득 관련 서류에 「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」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(외국 세무서 등)의 확인을 받거나, 아포스티유*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간주
 - * 협약가입국 사이에서 영사확인 등의 공문서 인증절차를 폐지하고 공문서 발행국가가 동 문서를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와 미국, 영국, 독일 등 92개국이 가입
 - ㅇ 해외소득의 원화환산 등은 개별 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

4 증빙소득의 입증방법

- 1) 근로 · 사업(부동산 임대소득 포함) · 연금 · 기타소득 등의 모든 종합소득 합산
 -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과다른 입증방법에 의한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
- 2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필수 징구하여 소득 종류(근로, 사업소득)를 확인하되, 신청인이 소득 및 재직(또는 사업영위)서류를 별도 입증하는 경우에는이에 따라 심사

- 3) 근로·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도 연소득 산정 가능
 - 위 3)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 사용 불가
- 4)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종 및 업태는 동일하고 상호만 변경된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을 인정하며, 보험 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인 경우에도 해당 소득을 인정
- 5) 소득발생기간 충족 여부는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

〈소득종류에 따른 입증서류〉

소득종류	입증서류	
근로	■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확인증명서(ISA :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) ■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(원천징수부 등 그 실질이 원천징수를 증명하는 서류) *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 제외 ■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(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 등)	
사업	■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, 소득확인증명서(서민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가입용: ISA) ■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* *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적용소득률이 고려된 사업소득급액은 그대로 적용 ■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* *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적용소득률 60%를 적용한 환산소득액은 연소득으로 간주. 즉, 환산소득액 = 지급총액 × 60% ■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	
연금	 ●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-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추가 - 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연금도 인정 가능 - 통장 분실 등으로 입금 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 	
기타	■ 세무서(홈택스) 발급 소득금액증명원	

5 인정소득에 따른 연소득 산정 및 입증방법

- 1)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활용해 소득 추정 가능
- 2)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
 - (1) 국세청 홈택스의 "사실증명원" (www.hometax.go.kr→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관련 신청/신고→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→신고사실없음)상 납세신고 사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
 - (2) 연소득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퇴직자(폐업 포함) 또는 연소득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
 - (3)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 소득자의 경우
 - (4) 부부 합산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인 경우
- 3)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아래 항목에 따라 소득 추정
- (1) 입증서류

납부내역	입증서류
국민연금	■ 공단 발급 "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"
건강보험료	■ 공단 발급 "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" ■ 공단 발급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*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세대주인 경우만 인정

(2) 입증서류에 의해 소득 추정하는 경우

납부내역	소득 추정 방법
국민연금	■ 연소득 =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 ÷ 보험료율* × 12월 × 95% * 연금보험료육은 「국민연금법」에서 정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육에 따름
건강보험료	■ 연소득 = 최근 3개월 평균납부보험료* : 보험료율** × 12월 × 95% *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"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"상의 건강보험료를 말하며, 종류(지역·직장 및 임의계속가입)가 다른 건강보험간 혼용붕가 ** 건강보험료육은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영」에서 정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육에 1/2은 급한 요육로 함

(3) 입증서류 없이* 소득 추정하는 경우

* 고객 동의하에 국민연균 또는 건강보험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경우

납부내역	소득 추정 방법
국민연금	■ 연소득 = 기준 소득월액 최근 3개월 평균 × 12월 × 95%
건강보험료	■ 연소득 = 평균 보수월액 최근 3개월 평균 × 12월 × 95%

- 4) 신청일 기준 연금·보험료 미납이 확인되는 경우 소득 추정 불가하나 승인일 기준 미납이 정리된 경우 소득 추정 가능
- 5)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시에는 5천만원을 한도로 함
 - o <u>소득요건 및</u> 실수요자, 우대금리 적용대상 등 우대요건 확인 시 5천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, 위 3)에 따라 95%를 적용한 소득 추정 금액으로 판단
- 6)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다른 소득 또는 배우자 소득과 합산 불가

6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

- 1) 증빙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인 경우 재직 또는 사업영위 사실을 확인
- 2) 재직 사실 확인 방법
 - (1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
 - (2) 건강보험 적용대상 제외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
- 3) 사업영위 사실 확인 방법
 - o 사업자등록증과 국세청 홈페이지(www.nts.go.kr) 또는 공공(마이)데이터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사실 확인
- 4) 위 2)와 3)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, 위촉증명서, 운송사업면허증, 고용계약서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갈음
- 5) 기타
 - (1) 일용근로 · 연금 · 이자 · 배당 ·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 생략 가능
 - (2) 위 (1)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연환산하거나 신청인이 상시소득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·경력증명서·지급명세서 등으로 소득 발생기간 및 현재 유지 여부 확인
 - (3) 인정소득으로 연소득 산정 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생략 가능